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Mar 31, 2020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Articles
- III. FAQ
- IV. News

Key Contacts

삼성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T 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 는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 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3.23, 금융위원회)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20.3.18)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의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함**
 - ▷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존재
 -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도 불공정행위·탈세내역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 중
 - 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익명 신고도 가능함**
 -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
 -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됨

2019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상 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

(20.2.25,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019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사전예고함
 -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내용이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됨
- 재무공시사항(14 개 항목)
 -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9 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감사보수 기재 여부
2	사업보고서상 감사시간 기재 여부
3	감사인명 기재 여부
4	감사의견 기재 여부
5	비감사용역보수 정보수집
6	<u>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제출 여부</u>
7	<u>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제출 여부</u>
8	<u>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u>
9	상장사(자산 1 천억원 이상)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3 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
2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
3	'주석'에 新 K-IFRS 기준서(제 1116 호 리스)의 변동영향·변동내용 기재 여부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는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점검

- 기타(2 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2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사항 공시

- 비재무공시사항(7 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감사위원회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2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3	최대주주의 개요
4	임원의 현황
5	개인별 보수 공시
6	특례상장기업 공시
7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도 중심 감독 방안 검토 ('20.2.3, 금융위원회)

- '20.2.3. 회계개혁 정책지원단 4 차 회의에서 회계개혁 관련 진행상황 및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함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제도 중심의 감독을 요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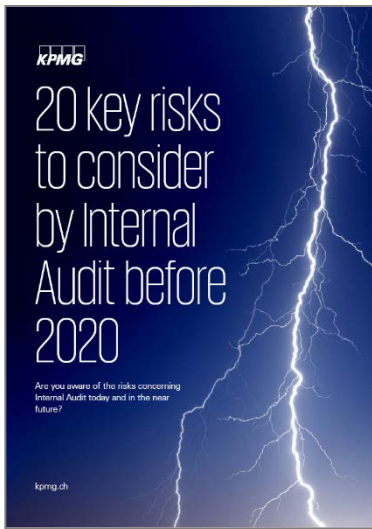
-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추가 검토할 예정으로 안내함
- 특히, 깐깐해진 외부감사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것은 회계개혁에 따른 건강한 성장통으로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선의의 피해기업은 없도록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Back to top](#)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20 Key risks to consider by Internal Audit before 2020



Global KPMG의 내부감사,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조직(IARCS)은 내부감사부서가 2020년에 고려해야 할 20가지 리스크 영역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보호법,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관련 내부통제의 중요성이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Global KPMG IARCS

[Back to top](#)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ELC 통제환경 중 교육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 2020.3.4)

Q.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원칙4. 적격성 유지'에 따르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적격성 있는 인력을 선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이중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통제 설정 시 회사의 교육기회 제공, 모니터링, 운영 등만 하면 되는가? 또는 성과평가(인사평가)에도 꼭 반영을 하여야 하는가?

A.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의 수립,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과의 연계, 개인의 성과평가, 보상 또는 징계조치 등 '원칙 5.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부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 또한 외감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에서는 회사의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계획·성과평가·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의 사항을 중

관련 근거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41, 4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승계계획 및 준비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0.3.2)

Q.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41.4 승계계획 및 준비'는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책임에 관한 승계계획을 수립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이에 내부회계관리제 외 임원(CEO, CFO)에 대한 승계계획도 수립하여야 하는가? 또한, 승계계획 수립 시 승계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인가?

A.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A21을 참고하면 최고 경영자와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조직 등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어 있음. 따라서 질문한 내용처럼 내부회계관리자 이외에 CEO, CFO 등의 임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회사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는 승계 후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선정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기본적으로 회사는 17가지 원칙 중 네 번째 원칙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인력의 적격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관련 근거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41.4, A21

[Back to top](#)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제목 클릭으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국내 동향

- 금융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제도 위주 진행 검토" [파이낸셜뉴스]
 -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의 고충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당분간 규제가 아닌 제도 위주로 진행 예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감사로 상향된 제도 초기인 만큼 완화된 감독 수행 예정
- 금감원 "기업 내부회계관리 꼼꼼히 살피겠다" [한국경제]
 - 금감원,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함
 -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 보고서 공시 여부도 포함됨
- 금융당국, '회계개혁 갈등' 최소화 주문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 조율절차 숙지하라" [민중의소리]
 -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 이후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시 제3자로 구성된 협의회로 의견 불일치를 조정하도록 안내함
 - 2월 3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감사인간 불일치시 조율절차를 숙지하도록 기업에 주문함

해외 동향

• SEC rolls back audit requirements for smaller companies' internal controls

[accounting today]

- 美 SEC, 연 매출 1억 달러 미만의 소규모 회사에게 ICFR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면제 시행 확정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허세봉 부대표

K-SOX TFT Leader

[Back to top](#)

김유경 전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이종우 전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전용기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이성노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전원표 상무	조선, 건설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심정훈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성명, 직급 클릭으로 이메일 발송이 가능합니다)

[Privacy](#) | [Legal](#)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